

의안번호	2202768
의 퇴 인	이정문의원
회 답 일	2024. 9.4.
추계번호	24D2753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의3(독립기념관 활성화 종합계획)	국가보훈부 장관은 독립기념관의 이용 편의 증진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독립기념관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13조의2(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¹⁾ 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다.
- ②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차등보조율의 적용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의 추가적인 소요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6조의3(독립기념관 활성화 종합계획)	×	미대상: 독립기념관에서는 이미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 등을 매년 제출하고 있어 이를 활용할 것이므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2	안 제13조의2(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	미첨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 설치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현 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으므로 추계가 어려움
 - 현행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미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매년 독립기념관에 국고보조금(2024년 281억 7,600만원)을 교부하고 있음
 - － 독립기념관은 대국민 독립정신 활성화를 위한 전시 활성화 사업,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독립정신 계승과 발전을 위한 독립운동사 연구, 관람편의 고객서비스 제공 및 복합문화공간 구축, 즐겨찾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독립기념관 이미지 제고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함
 -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가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추계가 어려움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준보조율도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상이하며,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 시설 사업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개정안의 지방자치단체 보조율 인상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추가적인 소요예산에 대한 비용 추계가 곤란함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여은구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여은구	02-6788-4673	cecil@assembly.go.kr